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국표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687
----------	------

발 의 년 월 일: 2026년 05월 26일
발 의 자: 홍국표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김규남, 김태수,
김혜영, 남궁역, 남창진,
문성호, 이상욱, 이종환
의원(9명)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따라 2019년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5년 단위의 지역균형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 자치구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단계적으로 정비해 왔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자치구간의 지역별 격차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에 대한 원인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서울시의 자치구 간 격차는 단순한 시장 경쟁의 결과가 아니라, 산업 입지 규제, 공공투자 우선순위, 교통망 구축 방향 등 제도적·정책적 요인이 장기간 누적되어 형성된 경로의존적 결과이다. 한강을 경계로 한 산업·경제 구조의 비대칭성이 구조화되어 있으며, 한강 이남(동남권·서남권)에는 기업 본사·금융·IT·첨단 클러스터가 집적된 반면, 한강 이북(동북권·서북권)은 주거 중심 구조와 제한적 산업 기반으로 성장의 파급효과를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
- 둘째, 2021년 균형발전 정책의 제도화에도 불구하고 강남 및 도심 중심의 산업·업무 기능 집중 현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지역 격차에 가장 큰 원인은 일자리 창출과 기업 활동 기반의 마련으로 이른바 '산업생태계'가 특정 권역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권역별 경쟁력 격차의 구조적으로 확대는 서울 전체의 성장 잠재력과 지속가능성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셋째, 균형발전은 산업기반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우선적 지원을 통해 격차를 줄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나, 동시에 이미 발전된 지역에 대한 역차별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균형발전계획은 일률적 분배가 아니라 격차 해소라는 명확한 관점에서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 이에 지역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시장이 지역간 격차의 실태와 그 해소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그 원칙을 명문화하고, 지역 격차 해소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자리·투자 분야가 분야별 추진전략에 명시적으로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균형발전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2. 주요내용

- 가. 지역균형발전계획 수립 시 격차 해소 관점의 우선 고려 원칙 신설(안 제5조 제2항 신설)
- 나. 분야별 추진전략에 일자리·투자 명시(안 제5조 제3항 제3호 나목)
- 다. 계획 수립 목적 조항의 정비(안 제5조 제1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지역격차 해소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지역균형발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제3호나목 중 “산업·경제”를 “산업·경제·일자리·투자”로 한다.

- ② 시장은 지역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지역간 격차의 실태와 그 해소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지역균형발전계획의 수립)</p> <p>① 시장은 <u>지역격차 해소를 통한 지역균형발전</u>과 지역별 특성 있는 발전을 위한 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계획’(이하 ‘지역균형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p> <p><u><신 설></u></p> <p>② 지역균형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2. (생략)</p> <p>3. 다음 각 목의 분야별 추진전략</p> <p style="padding-left: 20px;">가. (생략)</p> <p style="padding-left: 20px;">나. <u>산업·경제 활성화</u></p> <p style="padding-left: 20px;">다. ~ 사. (생략)</p> <p>4. 5. (생략)</p> <p>③·④ (생략)</p>	<p>제5조(지역균형발전계획의 수립)</p> <p>① ----- <u>지역균형발전</u>-----</p> <p>-----</p> <p>-----</p> <p>-----</p> <p>-----</p> <p>-----</p> <p>-----</p> <p>-----</p> <p>-----</p> <p>② <u>시장은 지역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지역간 격차의 실태와 그 해소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u></p> <p>③ -----</p> <p>-----</p> <p>-----</p> <p>1. 2. (현행과 같음)</p> <p>3. -----</p> <p>-----</p> <p style="padding-left: 20px;">가. (현행과 같음)</p> <p style="padding-left: 20px;">나. <u>산업·경제·일자리·투자</u> -----</p> <p style="padding-left: 20px;">다. ~ 사. (현행과 같음)</p> <p>4. 5. (현행과 같음)</p> <p>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p>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어를 수정(지역격차 해소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지역균형발전)하며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계획 수립 시 지역 간 격차 실태와 해소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명시하고(안 제5조제2항 신설), 지역균형발전계획에 포함될 사항으로 기존 '산업·경제' 부문에 '일자리·투자'를 추가(안 제5조제3항)하여 균형발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 이는 자구수정 등 조문정비에 해당하며 5년 단위 지역균형발전계획의 검토 기준과 방향성을 구체화한 것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
재정분석과장	이 선 희
입법재정지원1팀장	김 선 희
추 계 분 석 관	김 경 명

☎ 02-2180-7955
e-mail : kimkmi0809@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